

IPEF 협상의 필러별 주요 의제와 세부 조항 검토

김수동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dkim@kiet.re.kr)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IPEF의 4개 필러별 하위 의제에서 다뤄질 세부 조항에 대해 검토한다.

무역 필러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파트너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탄력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연결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9가지 하위 의제는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및 우수한 규제 관행, 경쟁 정책, 무역 촉진, 포괄성, 기술 지원 및 협력이다.

공급망 필러에서는 공급망 충격을 예상하고, 빠르게 회복하며,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하위 의제로는 복원력과 투자 확대, 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 메커니즘, 물류 강화, 근로자 역할 강화, 투명성 개선에 대한 세부 조항이 논의된다.

청정경제 필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5개의 하위 의제는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최우선 순위로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지속 가능한 토지, 물, 해양 솔루션, GHG 제거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깨끗한 경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이다.

공정경제 필러는 부패 방지 및 세금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혁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부, 기업 및 개인의 노력의 촉진하는 조항과 이니셔티브를 개발한다. 이 필러에서는 부패 방지, 세금, 역량 구축 및 혁신, 협력, 포용적 협업 및 투명성에 중점을 둔다.

핵심용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4개 필러,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1)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통상정책실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주립대(콜럼비아) 경제학박사.

- 목차
 - I. 서론
 - II. 중산층-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와 미국 노동정책의 부상
 - 1. 무역
 - 1) 노동
 - 2) 환경
 - 3) 디지털 경제
 - 4) 농업
 - 5) 무역원활화
 - 2. 공급망
 - 1) 공급망 복원력과 투자 확대
 - 2) 정보 공유와 위기 대응 메카니즘
 - 3) 투명성 개선
 - 4) 물류 지원의 강화
 - 3. 청정경제
 - 1) 에너지 안보 및 전환
 -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 3)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 4. 공정경제
 - 1) 부패방지
 - 2) 세금
 - III. 요약 및 결론

I. 서론

지난 9월 8~9일 14개국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적인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IPEF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²⁾에서 탈퇴한 지 5년 만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경제 참여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확장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미

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14개 국가는 IPEF 협정의 네 가지 필러(Pillar)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에 대한 협상 목표를 포함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각료선언문을 보면, 협상의 핵심 분야는 변하지 않았으며, 각 필러에서 다루는 영역의 범위가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실무급 회의와 이번 장관급 회의를 통해 참여국들은 IPEF의 어떤 필러에 참여할지 결정했다.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후 비준을 거쳐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인도를 제외한 13개 참여국들은 네 가지 필러에 모두 참여한다. 인도는 무역 필러에서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구속력있는 환경과 노동 조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역 필러를 제외한 다른 3개 필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더 많은 국가들의 IPEF 참여를 기대하는 미국의 희망과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IPEF 협상에 참여한 새로운 국가는 없다.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는 잠재적 IPEF 참여국으로 남아 있지만, 이들 국가가 IPEF에 가입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장관급 각료선언문 합의를 계기로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선언문에서 IPEF 당사국들은 관세 자유화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의미있는 경제적 또는 재정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어떤 양보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표1 IPEF의 목표, 구조 및 전략

구분	주요 내용
목표	무역 촉진, 공급망 안보 구축, 디지털 경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기준, 친환경-클린에너지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 협력체 달성
구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PEF 협정은 목표, 원칙, 전략을 포함하여 규제 수준과 추진 속도가 다른 4개 필러와 하위 의제들로 구성 2. IPEF는 의회 비준이 필요한 무역협정이 아닌 행정협정 3. 백악관 총괄하에 USTR과 상무부가 공동 주관, USTR은 무역, 상무부는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필러를 담당 4. 참여국은 미국, 인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 국가
5대 핵심 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법치주의, 정보 공유, 언론과 미디어의 자유 보장, 부패 방지, 재무 투명성, 사이버 공간의 개방과 보안 강화 2. 역내와 역외 지역의 연계 강화: 역내 동맹 강화와 관계 증진, 한미일 관계 강화, QUAD 활용 제고 3. 지역의 번영: 디지털 기술 전환에 대응,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기준에 기반한 무역 촉진, 공급망 안보 구축, 탄소 절감, 친환경에너지 공동 투자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 4.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 우주와 사이버 공간 분야에 대한 군사기술과 기능 혁신, 동맹국 군사 연계 강화, 대만의 안보 강화, 북한 비핵화 및 인권 대응 5. 21세기 국제적 위협에 대한 역내 대응력 구축 및 강화: 지구온난화 및 환경변화 공동 대응, 코로나19 팬데믹 후속 대응,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자료: 최정환(2022)과 박선민 외(2022)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 않았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과 탈세 억제와 같은 까다로운 이슈에 대해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본고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추진중인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협정, 미-EU 통상기술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의 공동합의문 및 IPEF 각료선언문 등을 바탕으로 4개 필러의 하위 의제에서 협상테이블에 올려질 주요 조항의 내용을 살펴본다.

II. 필러별 주요 의제와 세부 조항

1. 무역

1) 노동

미국의 FTA에 노동자 권리 조항이 최초로 언급된 FTA는 NAFTA다. NAFTA에는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11가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조항에는 노동 협력 메커니즘과 함께 기술 지원, 역량 구축 및 분쟁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FTA에 노동 조항을 포함하는 이유는 국가가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법을 훼손하지 않고, 자유무역이 적절한 기준의 부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 무역협정의 노동자 권리 조항은 NAFTA 이후 크게 발전했다.³⁾ 특히 USMCA에서는 당사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 원칙(ILO 선언)⁴⁾을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원칙을 포함했다. 또한 국가가 노동법을 시행하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법을 포기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잠재적 무역 제재 대상이 되며, FTA의 다른 조항에 적용되는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게 된다.

USMCA가 높은 수준의 노동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은 멕시코가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우려한다. 그리고 노동 조항과 분쟁 해결에 관한 USMCA의 원칙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협정의 노동 조항 일부를 수정했다. 수정된 USMCA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USMCA의 분쟁해결 챕터에서 패널 구성 방해 금지: 당사국이 분쟁 재판부 패널 선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분쟁 사건에서 패널 구성을 보장한다.
- ②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⁵⁾”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위반 혐의가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함으로써 입증의 책임을 전가한다.

3) Cathleen D. Cimino and M. Angeles Villarreal(2021), “Worker Rights Provis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FTAs),” CRS In Focus IF10046.

4)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1998): ① 결사의 자유, ② 단체 교섭권에 대한 효과적인 인식, ③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철폐, ④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철폐, ⑤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차별 철폐를 담고 있다.

5) See CRS report(2021) page 30, “In a Manner Affecting Trade and Investment.”

- ③ 신속 대응 메커니즘⁶⁾: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 대상 시설⁷⁾에서 특정 노동권 거부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패널 조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을 추가한다.
- ④ 멕시코의 노동 개혁 모니터링: USMCA 이행 법안은 새로운 내부위원회와 노동 담당관을 설치하고, 멕시코의 노동 개혁 이행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 ⑤ 강제 노동 및 근로자에 대한 폭력에 대한 문제해결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한다.

2) 환경

노동 챕터와 마찬가지로 환경과 관련된 합의를 포함하는 최초의 미국 FTA는 NAFTA다. 그리고 FTA의 환경 조항도 FTA를 거듭함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되었다. 대표적으로 USMCA는 다자간 환경협정(MEA)⁸⁾에 따른 의무를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다룬다. 여기에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와 권고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선박 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솔루션을 장려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아울러 남획이나 과잉 어업을 유발하는 보조금의 통제, 축소 및 궁극적인 제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장려한다. USMCA의 환경 챕터는 각 당사국에게 아래 규정의 준수를 의무화한다.

- 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 ②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약화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률을 포기하거나 무력화하지 않는다.
- ③ 환경법과 관련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하고 장려하도록 한다.
- ④ 환경보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각 당사국은 다자간 환경협약과 일치하는 법령 및 규정을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다른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 ⑥ 각 당사국은 자체적으로 자국내 환경보호 수준을 결정하고, 규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한다.
- ⑦ 집행 자원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한다.
- ⑧ 분쟁해결 절차를 제공한다.
- ⑨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한편 USMCA 수정 의정서는 협정의 기준언어 중 일부를 명확히 하고, 기존 USMCA 텍스트에서 부족했던 다음과 같은 결점을 해결했다.

- ① 분쟁 당사국이 달리 증명할 수 없는 한 환경 분쟁이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재확인한다.

6) See CRS report(2021) page 30, Rapid Response Mechanism.

7) See CRS report page(2021) 30, ... labor rights at "covered facilities," as opposed to a government inspection.

8)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 ② 다음과 같은 다자간 환경협정(MEAs)들의 당사국으로써 이들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 규제 및 기타 조치를 구체적으로 채택, 유지 및 실현하도록 다른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⁹⁾
-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¹⁰⁾
-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Treaty)¹¹⁾
- ◎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¹²⁾
- ◎ 남극 해양생물 자원에 관한 협약¹³⁾
- ◎ 국제 포경 협약¹⁴⁾
- ◎ 전미 열대 참치위원회¹⁵⁾

USMCA는 CITES, MARPOL Treaty 및 몬트리올 의정서를 명시적으로 참조했다. USMCA 이행 법안은 노동 챗터과 유사하게 모니터링과 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위원회를 만들고, 멕시코 시티에 협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사무소 설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 수자원 인 프라 프로그램, 무역 집행 신탁기금, 그리고 북미개발은행(NADB)¹⁶⁾의 자본 확충에 따른 자원과 자금을 관리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3) 디지털 경제

IPEF의 디지털 경제 의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중소기업, 여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9)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을 말한다.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동식물의 생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CITES를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하였다.

10)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1989년 발효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현대의 대기 환경문제의 하나인 오존층의 파괴를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8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체결되었고,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공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이다.

11) 해양오염방지협약(Marine Pollution Treaty, MARPOL treaty): 해양오염방지협약은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제외한 선박의 통상적 운영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가 목적이다.

12)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습지와 습지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이다. 람사르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이는 1971년 2월 2일에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람사르협약이라 부른다. 일명 습지협약이라고도 한다.

1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1980년 5월 20일에 남극조약 협의회에서 작성하였고, 1982년 4월 7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85년 4월 28일 발효하였고, 당사국은 27개국(그 외에 유럽공동체)이다.

14) 국제포경조약: 고래의 보호, 포경업 발전을 위해 1949년 관계 각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① 남극해에서 포획할 수 있는 고래 수의 제한 ② 고래 해급일 설정 ③ 포획금지구역 설정 ④ 어린고래의 보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하여 매년 1회 국제포경위원회가 열려 조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15) 전미열대참치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동태평양 참치 자원의 생산량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 중의 하나로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50년 3월 3일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은 2005년 12월 13일 가입하였다.

16) 북미개발은행(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연방 정부가 동등하게 출자하고 관리하는 이중 국가 금융기관이다.

기여하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이며, 수준 높은 디지털 통상 규범을 포함할 예정이다. 미국이 체결한 최근 FTA 중에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조항을 포함하는 FTA는 USMCA가 있다. USMCA의 디지털 무역 챕터는 전반적으로 디지털 거래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디지털 무역과 관련이 있는 산업 부문을 광범위하게 다루지만 정부 조달 또는 당사국 정부가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조항은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디지털 거래와 관련된 의무의 대부분은 디지털 무역 챕터에서 찾을 수 있지만, 금융서비스, 지식재산권(IPR) 및 통신을 비롯한 다른 챕터에서도 관련 조항이 있다. USMCA의 디지털 무역 챕터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한다.
- ②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제한 및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항을 금지한다.
- ③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접근을 위한 조건으로 소스 코드 또는 알고리즘 공개 또는 이전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금지한다.
- ④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또는 기타 요금을 금지한다.
- ⑤ 당사국에게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 방지법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요구한다.
- ⑥ 사이버 보안에 대한 협력, 사이버 보안 위험

및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규범적 규정 마련 시 위험 기반 전략 및 합의 기반 표준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

- ⑦ 디지털 서비스에 의해 저장, 처리, 전송, 배포 또는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 부과를 금지한다. 단, 지식재산권(IPR)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의 책임은 제외한다.
- ⑧ 공개된 정부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게시하도록 촉진한다.

4) 농업

USMCA의 당사국들은 NAFTA의 농업시장 개방 조항을 유지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챕터에 몇 가지 다른 비시장 접근 조항을 추가하는 데 동의했다. NAFTA의 농업 조항에는 관세 및 할당량 철폐, SPS 조치, 원산지 규정, 등급 및 품질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¹⁷⁾ 그리고 USMCA의 농업 챕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① 당사국 간의 규제 일관성 유지
- ② 포장 전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한 상표등록 절차에 대한 보호(구체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합법적인 목적”¹⁸⁾인 경우로만 범위를 제한)
- ③ “관련된 과학적 원칙”¹⁹⁾에 기반한 SPS 규칙 채택

17) CRS In Focus IF10682, NAFTA Renegotiation: Issues for U.S. Agriculture, by Renée Johnson, and CRS Report R44875,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U.S. Agriculture, by Renée Johnson.

18) CRS Report(2021) page 13, ...(limited to furthering “legitimate objective[s],” which is not defined)...

19) CRS Report(2021) page 13, ...SPS rules based on “relevant scientific principles:” and...

④ SPS 규정의 투명성 향상

농업에 관한 USMCA 협상에서 미국의 주요 요구는 공급 관리가 철저한 캐나다의 유제품, 가금류 및 계란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접근이었다. 공급 관리 시스템은 해당 제품을 캐나다로 수입할 때 관세를 할당량(TRQ)²⁰을 설정한다. 할당량 내에서 부과되는 대부분의 관세는 0%이지만, 유제품의 경우 할당량 외 관세는 313.5%에 달한다. 캐나다는 공급 관리를 폐지할 의사가 없었지만 유제품에 대한 TRQ의 연간 한도를 확장하는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그 대가로 미국은 캐나다 유제품, 설탕, 땅콩 및 면화에 대한 더 많은 시장접근을 허용했다. 미국은 땅콩과 면화에 대한 관세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유제품과 설탕 제품에 대한 TRQ를 확대했다. 미국은 또한 캐나다의 밀 등급 시스템에 대한 변경과 맥주, 와인, 증류주의 표시 및 판매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제철 농산물에 무역구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다음은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USMCA의 생명공학 조항이다.

- ① 생명공학을 사용하는 작물에 대한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신청 및 승인 절차의 수립
- ② 생명공학으로 생산된 소규모 승인되지 않은 작물의 수입 선적 절차 도입
- ③ 농업 생명공학에 관한 워킹그룹의 설치

5)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효율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다. 즉 무역원활화 조치들은 관세 및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경을 넘어 무역을 더 쉽게 하고 무역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WTO 협정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무역원활화는 좁게는 국경에서의 행정 및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더 넓게는 국경 너머의 조치 및 규정도 포함하도록 정의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신 무역협정인 무역원활화협정(TFA)에서는 통관 절차의 투명성 부족 및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문서 요건과 같은 무역장벽을 해결하는 것을 무역원활화의 목표로 제시한다.

한편 USMCA의 전신인 NAFTA의 관세 및 무역원활화 챕터에는 원산지 증명, 세관행정 및 집행, 관세 규정 및 협력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USMCA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을 국제 무역 현실에 맞춰서 현대화하였다. 그리고 USMCA의 당사국들은 앞서 언급한 WTO의 TFA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였다. 무역원활화는 결국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개선, 세관 행정의 디지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USMCA 조항에는 국내 법률 및 규정 준수를 지원하면서 무역 또는 상품의 통과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통관 절차를 관리하는 약속을 포함한다. 당사국은 무역 촉진에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무역 촉

20) Tariff-rate quotas (TRQs) allowed NAFTA partners to export specified quantities of a product to other NAFTA countries at a relatively low tariff, but subjected all imports of the product above a pre-determined threshold to a higher tariff.

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한다. 기타 조항에는 무역 촉진과 관련된 정보 및 자원의 온라인 공개 조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 이해관계자를 위한 문의 창구 설치, 서면에 의한 사전 관세 판정 통보 규칙, 무역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상품 반출 절차가 포함된다.

당사자 간 특송 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 절차와 자동화된 위험 분석 및 관리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단일 인터넷 액세스 시스템 창 구축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및 투명성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USMCA의 파트너 국가와 미국 무역의 규모와 빈도를 고려할 때, USMCA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IPEF의 무역원활화 조항들은 역내국 간 무역 참여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공급망

IPEF의 공급망 필러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년 9월 미국과 EU가 설립한 미-EU 통상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의 합의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는 동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올해 5월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양국은 전략 산업의 공급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협력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통상기술위원회는 중요 산업 부문 또는 상품으로 선정된 희토류 광물, 태양광, 반도체 산업에 대한 워킹그룹을 가동하여 공급망의 공통된 취약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희토류 광물에

서는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태양열은 공급망의 투명성과 다양화를 촉진하고, 반도체는 가치사슬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기서는 TTC 공동선언문과 IPEF 각료선언문을 바탕으로 공급망 필러의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공급망 복원력과 투자 확대

중요 및 전략 산업 부문의 공급망 회복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야기된 추가적인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협상에서 다뤄질 세부적인 사항에는 정책 설계의 원칙을 수립하고, 중요한 상품과 원료의 책임있는 조달을 장려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공공투자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하며, 연구개발 분야에서 공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협력한다. 그리고 공급망 상대방의 생산 또는 수출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공급망이 예상치 못한 혼란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복원되기 위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공급망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요 부문의 무역과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물리적 및 디지털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병행한다.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투자 지원 전략으로

는 경제 개발 프로그램, 기술 협력 및 역량 구축 강화, 고급 제조기술의 현대화 노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TTC 산업 부문에 대한 합의사항을 보면, 미국은 희토류 추출, 분리 및 정제를 위한 신기술의 상업적 타당성, 효율성 및 대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 광물의 공급망 연구시설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한 희토류 광물에 대한 국내 상업용 가공 처리 및 분리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EU는 Horizon Europe²¹⁾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희토류의 채광, 처리, 분리, 정제, 재활용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태양광 분야에서 양국은 공동의 환경, 사회 및 품질 표준을 준수하고 기존 공급망 집중을 완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열 부문별 프로젝트 개발, 자금조달 방법 설계 및 태양열 제조 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2) 정보 공유와 위기 대응 메커니즘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시의적절한 정보 공유는 공급망 중단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한다. 중요 산업 부문에서 상품 및 관련 필수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할 대응 조치를 포함하여 공급망 취약성 및 중단에 대한 정부 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데이터의 안전한 이동과 교환을 촉진하고, 개별 정부의 보안 요구사항, 규정 준수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 사용을 권장하는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공급망 위험 발생 시 정보 입수 및 위기 대응을 위해 모범 사례 공유 및 필요한 경우

정책 또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TTC에서 합의한 반도체 산업의 조기 경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반도체 가치사슬에 대한 공동의 조기 경보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공급망 중단에 대한 협력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미국 정부 기관과 유럽 위원회는 반도체 공급망 중단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개월 동안 전문가 회의에 참여한다. 다음은 전문가 회의 운영 방침이다. ① 2주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여 반도체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논의한다. ②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회의자료는 독립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 작성, 배포 및 전달되며, 독립적이고 민감한 정보의 기밀을 보호한다. ④ 전문가 회의가 끝나면 의장은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영구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안한다.

3) 투명성 개선

중요 산업 및 상품 부문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투명성 개선은 환경보호, 사회발전 및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반도체와 같은 중요 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도구 및 조치의 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공급망 위험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장려한다. 공급망의 중단 문제를 식별하는 것이 그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1) Horizon Europe은 연구 및 혁신을 위한 EU의 핵심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EU의 경쟁력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산업계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공급망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이 공급 부족을 예측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에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반도체 수요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업계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수요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공급망 모니터링을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치가 비즈니스 기밀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급망 중단에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물류 지원의 강화

육상, 항공, 수로, 해상, 해운 및 항만 인프라를 포함한 공급망의 물류 강화는 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물류 지원 분야에서는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망 물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①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보장하면서 물류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② 공급망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의 촉진, ③ 공급망 물류의 취약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진단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여기에 공급망 물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통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하고, 기존 또는 잠재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미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은 국제 공급망 탄력성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첫

째, 미국 국무부는 공급망 혼란과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멕시코와 중미 파트너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둘째, 미국-아세안 정상 회담에서 관세 및 통관 촉진 프로그램인 아세안 단일 창구를 미국의 단일 창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두 이니셔티브 모두 통관 및 통관 절차를 개선하고 단순화하여 물류 지연을 줄이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IPEF 협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될 예정이다.

3. 청정경제

1)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에너지 이용 및 경제성, 에너지 효율성 및 보존, 수요 측면 관리, 에너지원의 다양성, 에너지 공급망 복원력은 지역의 에너지 안보 및 전환에 중요하다.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의 배포 및 청정에너지 이용량 확대와 관련된 정책, 표준, 인센티브 구조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역내 전력망 개선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 및 보존을 촉진하고, 에너지 부문 메탄 저감 기술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항과 이니셔티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에너지 안보 및 전환을 통해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TTC 합의문²²⁾에는 공동의 기후 목표 달성

22) U.S.-EU Joint Statement of the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Conclusions on Working Group 2 - Climate and Clean Tech, Annex II, p 11.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정 저탄소 제품 및 기술의 배포를 가속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담고 있다.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 emission) 목표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조달 협력에 따른 녹색 공공 조달 정책 추진, 둘째, 상품 제조의 탄소 이력 계산 방법론 조정, 셋째, 전기 이동성과 발전 스마트 그리드와의 상호 연계 운용성이다. 그중 녹색 공공 조달 부문에서의 정책 공조와 모범 사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진행중이다.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별 국가는 탄소 배출 순제로 목표를 향한 자체 경로를 추구하면서 최우선 순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인센티브 구조 및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하여 제로 배출 상품, 서비스 및 연료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주목할 부분은 대규모 조달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 부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의 광범위한 배포에서 선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비용이 저렴하면서 안전한 온실가스 제거 기술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내구성 있는 자연 자원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과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역내 전반에 걸쳐 탄소 포집, 활용,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는 조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시장 및 비시장 솔루션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을 위한 조항도 필요하다.

3)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청정경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 및 민간 부문 조달 시 저배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한 제로 배출 미래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지속 가능한 금융 조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안전하고 다양하며 탄력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촉진한다. 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국제 혼합 금융 상품을 통해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자원을 매칭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청정경제 목표에 중요한 기술 협력, 인력 개발, 역량 구축 및 연구 협력을 촉진한다.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4. 공정경제

1) 부패방지

미국은 FTA 협정에 투명성과 반부패에 관한 챕터를 통합함으로써 국제 사회가 부패 퇴치 약속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오랜 기간 미국 정책의 일부였으며, 반부패 조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화되면서 발전했다. NAFTA에는 투명성 또는 반부패와 관련된 별도의 챕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인 투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및 조항을 포함하였고 이는 당시에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TPP 협정에서 반부패 조항이 미국 FTA 챕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 USMCA

는 반부패에 관한 새로운 챕터를 마련하여 당사국들이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 및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 USMCA 반부패 챕터의 범위는 계약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뇌물 및 부패를 방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한한다.

IPEF에서는 USMCA에 더하여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²³⁾, 금융행동태스크포스(FATF)²⁴⁾ 및 OECD 뇌물방지협약²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추가적인 진전사항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UNCAC에 따라 국내의 뇌물 수수 및 관련 부패 범죄를 예방, 퇴치 및 제재하기 위한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그리고 범죄 수익을 식별, 추적 및 회수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다음으로 FATF 기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법인의 실소유권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목적의 자금조달 방지 조항을 강화한다. 정부 조달 관행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촉진하고, 민간 부문이 내부 통제, 윤리교육 및 반부패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공무원의 청렴성을 증진하고, 직장에서의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따라 노동권을 침해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기존 반부패 식별 메커니즘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의 도입이 예상된다.

2) 세금

기존의 국제협약 및 표준에 따라 조세 관할 당국 간의 조세 목적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투명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세무 행정 관행을 통해 세무 행정 및 국내 자원 동원을 개선하기 위한 글로벌 및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디지털화로 인해 제기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OECD와 G20가 추진중인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이며, 해당 BEPS 프로젝트²⁶⁾가 시작된 이후로 핵심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직접 및 간접 세금 문제를 다루는 몇 가지 중요한 솔루션은 공정경제의 세금 의제에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된다.

III.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추진중인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협정, 미-EU 통상기술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의 공동합의문 및 IPEF 각료선언문 등을 바탕으로 4개 필러의 하위 의제에서 협상

23)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유엔(UN)에서 2000년부터 각국이 연루된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03년 10월 31일 채택한 반부패국제협약이다.

24) 금융 행동 태스크포스(자금 세탁 방지)(Financial Action Task Force, TATF): G7의 주도로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989년에 설립된 정부 간 조직이다.

25) OECD 뇌물방지협약: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으로, 일명 부패라운드(CR : corruption round)라고도 한다.

26) OECD(2021),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CTOBER 2021.

테이블에 올려질 주요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 필러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탄력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연결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경쟁정책, 투명성 및 우수한 규제 관행, 무역 촉진, 포괄성, 기술 지원 및 협력의 9개 하위 의제를 다룬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 의제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기반한 노동법의 채택, 유지 및 집행, 기업의 책임과 대중의 참여, 노동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의제에서는 환경보호에 의미있게 기여하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공통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청정 기술 및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촉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기후변화 솔루션, 녹색 투자 및 금융, 순환경제의 확대, 환경협정의 이행과 강화된 환경 협력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예정이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온라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와 디지털 거래 촉진, 차별적 관행 해결, 탄력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환경에 대한 규정들이 논의에 포함된다. 농업 의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식품 및 농산물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 규제 절차의 투명성과 요구 사항,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에 대한 과학 및 위험 기반 의사 결정 메커니즘, 식품 공급망의 비용 절감을 위한 디지털 수단 및 조치에 대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무역원활화 의제에서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 등의 효과적인 이행을 포함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통해 무역을 촉진하는 조항을 다룬다. 자세한 무역 촉진 조치의 디지털화, 물류 및 운송 문제 해결, 투명성, 관세 데이터 및 문서의 전자적 처리, 전자 지불, 관세 협력 등이다.

공급망 필러에서는 중요 산업 부문과 핵심 상품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설정과 주요 산업을 식별하는 프로세스가 논의될 예정이다. 복원력과 투자 확대 의제에서는 디지털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촉진,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투자지원 전략, 경제 개발 프로그램, 기술 협력 및 역량 구축, 고급 제조기술 현대화 노력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원 등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다. 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 메커니즘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하는 대응 조치, 공급망 위협에 대한 정부 간 조정 메커니즘 구축, 데이터의 안전한 이동과 교환을 촉진하는 비밀유지와 규정 준수 고려사항, 기술 사용을 권장하는 정보 공유 프로세스, 공급망 위기 정보 수집과 식별, 모범 사례 공유와 정책 및 프로세스 개선 사항 등이 논의의 대상이다. 투명성 개선 의제에서는 공급망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및 조치의 개발, 공급망 위협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이 대화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공급망 물류 강화 의제에서는 인프라를 포함한 공급망 물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 촉진, 공급망 물류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공통의 프레임워크 개발, 기존 또는 잠재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등이 논의의 주제들이다.

청정경제 필러의 하위 의제인 에너지 안보 및 전환에서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배포 및 이용량 확대와 관련된 정책, 표준 및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협

력을 강화하는 방안, 역내 전력망 개선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촉진, 에너지 부문 메탄 저감기술 개발과 투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의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투자, 저공해 및 제로 배출 상품, 서비스 및 연료의 이용 확대, 지속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혁신적이고 내구성 있는 자연 기반 솔루션 개발 지원, 탄소 포집, 활용,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는 조항,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조항 등이 논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의제에서는 제로 배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조항, 제로 배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금융조달 협력, 청정경제 목표에 중요한 기술 협력, 인력 개발, 역량 구축 및 연구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공정경제 필러의 부패 방지 의제는 부패 범죄의 예방, 퇴치 및 제재에 대한 규정, 범죄 수익을 식별, 추적 및 회수하기 위한 조치,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법인의 실소유권 강화 방안,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목적의 자금조달 방지, 정부 조달 관행의 투명성과 무결성 촉진, 민간 부문의 내부 통제, 윤리 및 반부패 준수 프로그램 시행, 부패 범죄에 대해 비밀보호 시스템 구축, 기존 반부패 식별 메커니즘의 투명성과 구현성 강화 등이 핵심적인 협상 주제이다. 세금 의제에서는 조세 당국 간의 정보 교환 및 투명성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한 내부 자원 동원 지원,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최정환(2022),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i-KIET 산업경제이슈, 2022/06/17, 산업연구원.

박선민 외(202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 IPEF,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원, KITA 통상리포트, Vol. 05.

〈외국문헌〉

Cathleen D. CiminoIsaacs and M. Angeles Villarreal(2021), “Worker Rights Provis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FTAs),” CRS In Focus IF10046.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Pillar I -Trade, Pillar II -Supply Chain, Pillar III -Clean Economy, Pillar IV -Fair Economy -Trade, USTR.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협정문, USTR.

OECD(2021),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CTOBER 2021.

Renée Johnson(2017), “NAFTA Renegotiation: Issues for U.S. Agriculture,” CRS In Focus IF10682.

Renée Johnson(2017),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U.S. Agriculture,” CRS Report R44875.

U.S.-EU Joint Statement of the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U.S. Department of Commerce, 16 May 2022.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Establishes Economic and Technology Policies & Initiatives, THE WHITE HOUSE, 16 MAY, 2022.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 협정문, 7/1/20 Text, USTR.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https://crsreports.congress.gov>, R44981, Updated December 28, 2021.